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12일, 정청래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1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11. 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3. 24.) 상정, 심사, 의결(대안반
영폐기)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26. 3. 26.)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정청래의원)

공휴일은 우리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하나인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임.

특히 5월 1일 노동절은 모든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고 안정된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이지만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모든 노동자의 권익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어버이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고 공경해야 할 어버이날 역시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효를 다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노동절 및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해 국민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5호, 제7호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조문상 전문위원)

개정안은 ‘노동절(근로자의 날, 5월 1일)’을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로 지정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휴무일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는 한편 공무원을 포함한 일반 국민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공무원도 공공 부문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근로자의 날에 민간 기관 등이 휴무함에 따라 공공 부문의 업무 여건에 일정한 제약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봄.

다만, 헌법재판소는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이 공무원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점,¹⁾ 노동절(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관공서가 휴무함에 따라 국민의 불편이 예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심사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의원)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1) 2020헌마1025(2022. 8. 31.) 판결요지

가. 공무원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에는 공무원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및 직무의 공공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공무원의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서 토요일도 휴일로 인정되므로, 공무원에게 부여된 휴일은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유급휴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일반근로자에 비해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재판소의 위 설회의 입장은 그대로 타당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단결권 및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단결권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